

부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가단3489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부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석현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21. 9. 30.

판결 선고2021. 11. 11.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2,949,090원 및 그 중 12,931,600원에 대하여 2020. 11. 3.부터 2021. 5. 13.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20. 5.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20. 5. 19. 접수 제249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원고는 2018. 10. 19. 피고 A가 C조합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위대출금채무 전부에 관하여 신용보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9. 7. 26. 피고 A가 C조합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위 대출금채무 전부에 관하여 신용보증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A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면서 피고 A와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2) 피고 A는 C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이행을 2020. 4. 20.부터 연체하였다.
- 3)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11. 3. C조합에게 피고 A의 대출금채무 잔액 12,931,6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액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5)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368,26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350,770원을 회수하여 미회수 법적절차비용은 17,4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과 미회수 법적절차비용 합계 12,949,090원 및 그 중 구상금 12,931,6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1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5.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는 2020. 5. 14. 피고 B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20. 5. 19. 접수 제24986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피고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2) 한편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 24,36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무를 비롯해, D카드에 대한 8,128,000원, E카드에 대한 7,324,000원, F카드에 대한 7,950,000원, G카드에 대한 3,500,000원, H카드에 대한 7,017,000원 등 합계 33,919,000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금채무, 그 외에 기업은행 등에 대한 현금서비스 대출금채무 합계 15,200,000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앞서 인정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12,949,090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피보전채권이 된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는 C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고, 원고가 C조합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즉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수 있었다.

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조합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였다.

2) 사해행위 성립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채무자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A가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B는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영

별지